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형사1부장 황성민

전화 033-769-4302 / 팩스 033-769-4642

보도자료
2023. 5. 26.(금)

제 목

원주시내 조직폭력 사건 재판에서 조직원들의 조직적·계획적 위증 공모 사실을 밝혀내 엄단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(제11조 제1항)

-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형사1부(부장검사 황성민)는 원주시내 00파 조직폭력사건 재판에서, 조직원들이 우두머리의 교사에 따라 조직적·계획적으로 ‘우두머리의 폭행 지시는 없었다’는 취지로 위증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, 조직원 등 10명을 위증 혐의로 입건하여 9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 - 교도소·주거지에 대한 압수·수색으로 휴대전화 5대, 일기장 등 압수,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, 940분 분량의 접견 녹취록 및 5,000쪽 상당의 원 사건 기록 분석, 영상녹화 조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함
-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위 폭처법 위반(공동상해) 등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도, 반성없이 조직적·계획적으로 위증을 공모한 00파 조직폭력배들의 위증 범행 전모를 규명함
- 원주지청은 앞으로도 위증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철저히 수사하고, 적발된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하여 “법정에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.”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음

1

사건의 개요

- 00파
 - 원주시 일대 등에서 아동·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, 아동·청소년 성매매 강요 등의 범행을 하던 조직

● 피고인

위증 교사범	A, B(각 우두머리, 형제), C(A, B의 모친)
위증 사범	D, E, F, G, H, I, J (각 조직원 또는 원사건 피해자, 이하 'D 등'이라 함)

● 재판 중인 원 사건 요지

- A, B, D 등은 공모하여, 조직을 이탈한 조직원들을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여 [폭처법위반(공동상해) 등]

● 위증 등 공소사실 요지

- (A, B) '22. 9.경부터 '22. 12.경 사이에 교도소·법정에서, 조직원인 D, E, F 등에게 '우리가 폭행 지시한 내용은 좀 빼고 증언해 달라'는 취지로 말하여 [위증교사]
- (D 등) '22. 11. 16.경부터 '23. 1. 9.경까지 법정에서,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'A, B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다'는 등 허위의 진술을 하여 [위증]

2

수사 경과

● '23. 2. 8. 원 사건, 1심 선고(전부 유죄)*

* 판결 요지 : 일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부분은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, 신빙성이 없음

● '23. 3.~ 5. 교도소 내 수용거실,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, 접견 녹취록 분석, 관련자 영상녹화 조사

● '23. 5. 19. A, B, D 등 각 불구속 기소, C 기소유예 처분*

* A, B와 조직적 공모는 없었던 점 등 참작 기소유예 처분

3

수사 의의

- 원 사건 1심 재판에서 조직원들이 동일한 취지로 위증하는 사실을 확인, 법정증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이한 진술임을 부각하는 등 집중신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위증시도를 차단함과 동시에 위증한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전부 유죄가 선고됨
- 조직원들의 증언이 모두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‘우두머리의 폭행 지시는 없었다는 부분만 반복된 점 등을 통해 조직적인 위증 공모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, 적극적인 위증 수사에 착수함
 - ①주거지 2회, 교도소 내 수용거실 1회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 5대, 일기장, 서신 등 압수, ②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및 문자, 사진, SNS 대화내역 등 전수 분석, ③940분 분량의 접견 녹취록 분석, ④5,000쪽 상당의 원 사건 증거기록 분석, ⑤피고인 9명 전부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 등을 통해 조직폭력배들의 조직적·계획적 위증 범행 전모를 규명함
- 공판중심주의 추세 강화로 법정 증언의 중요성은 증대되었으나, 위증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,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조직폭력배들의 위계질서에 따른 계획적인 위증범죄를 밝혀내어 엄단함

4

향후 계획

- 앞으로도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위증 사범들에 대해서는 관용없는 처벌을 통해 사법신뢰 회복에 기여하고, 궁극적으로는 위증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